

2021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3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, 취업승인,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 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·관리 및 결과의 공개)에 따라,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개함

□ 공개일/ 공개방법

- 2021.11.12.,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게시

□ 2021년 11월 취업심사 결과

-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.11.8.~11.9. 위원회(서면)를 개최하고, 올 상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한 1건에 대하여
 - 심의안건 1건에 대하여 “취업가능”을 결정하였음
- 한편,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함.
- 취업심사 내역

퇴직 당시			취업(예정)		심사결과	결정사유
소속	직위(직급)	퇴직일	업체(직위)	일자		
중구	임기제5급	2018년 9월	(주)투데이아트 (직원)	2021년 2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